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
「경기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」 참가자 모집
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민간의 우수 자원(자금, 전문성 등)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 연계형 기술창업지원정책을 도입하여 미래 유망 기술분야의 우수 창업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합니다. 관심 있는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신청자격

○ **[모집대상]** 공고일 이후 경기스타트업플랫폼(www.gsp.or.kr)을 통해 투자받은 스타트업 ※ 플랫폼 회원 간(스타트업-투자자) 투자 성사된 스타트업

구 분	신청 요건
스타트업	◦ 회사 설립일※이 7년 이내인 기업 ◦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경기도 소재 ◦ 업종/업태가 기술창업인 경우
투자자	◦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회원사※로 투자자금 메뉴 내 투자회사로 등록된 경우 (투자회사 당 최대 2개 스타트업 추천 가능) ※ 한국벤처캐피탈협회,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회원사

※ 회사설립일 기준 : 개인사업자(사업자등록증명 상 '사업개시일(개업일)' 기준)
법인사업자(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)
(단,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,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)

○ **[모집규모]** 10개사 내외

○ **[모집분야]** 기술창업분야

1) 기계/재료, 전기/전자, 정보/통신, 화공/섬유등 기술창업분야,

2) 콘텐츠, 출판, 영상업등 지식창업분야,

3) 공예/디자인, 식료품등 제조업, 아이디어 상품 등 아이디어창업분야,

4) 앱/플랫폼 개발등 IT창업분야,

5) IoT/빅데이터/AI/첨단로봇/3D프린팅/친환경 에너지 등 4차산업창업분야

□ 지원규모 : 최대 30백만원 이내(사업화지원금)

○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유치액의 50% 이내,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가입 후 1회에 한해 지원됨, 투자회사는 최대 2개 스타트업 추천 가능

○ 기업부담금(총 사업비의 20% 이상)

투자사 투자금	사업화지원금(사업비)	
	경기도 지원금	스타트업 부담금
경기도 지원금의 50% 이상	총 사업비의 80% 이내 (최대 30백만원)	총 사업비의 20% 이상 (현금+현물)

□ [사업기간] 협약일로부터 1년

□ [지원내용]

프로그램	지원내용		지원한도
아이템 개발비	• 금형, 목형,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 외주용역비, 시제품 제작용 재료구입비, 시험분석 및 각종 인증획득비, 개발공간비 등 ※ 외주용역비 :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비용 ※ 재료구입비 :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,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(견품, 시약, 재료 구입비 등) (제품제작시 필요한 최소수량 구입분만 인정하며 최소수량분이라는 확인증을 거래처에서 받아 증빙)		지원배정금액 내 ※ 개발공간비는 3백만원 한도
	S/W, 앱, 플랫폼 개발 등	• 소프트웨어 임차비 및 구입비 – 단, 사무용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 – 임차료는 협약기간 내 발생한 비용만 인정	지원배정금액의 50% 이내
		•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비(개발인건비)	지원배정금액의 70%이내 (신규고용시 100%)
지식 재산권	• 지식재산권 출원비(등록비) 지원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		지원배정금액 내
홍보 마케팅	• 홍보물(인쇄물, CI)제작 지원, 온라인 마케팅 지원		지원배정금액의 50% 이내
	•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		
1:1 멘토링	• 전문가를 통한 창업 전반 멘토링 지원 –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정교화 전문가 컨설팅, IR 전략 컨설팅 – 국내/외 시장 조사, 지재권 출원,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컨설팅 ※ 교육수강료 인정(신규-교육비완납영수증, 수료증, 교육선정공문, 강사프로필 등 아이템과 관련된 교육확인 증빙서류)		2백만원 내

프로그램	지원내용	지원한도
세무/회계지원	• 창업기업 세무/회계 기장 대행료 지원 • 회계감사비 : 회계감사보고서	2백만원 내
시장조사비	• 해당 사업 분야 시장조사 비용지원	2백만원 내

□ 추진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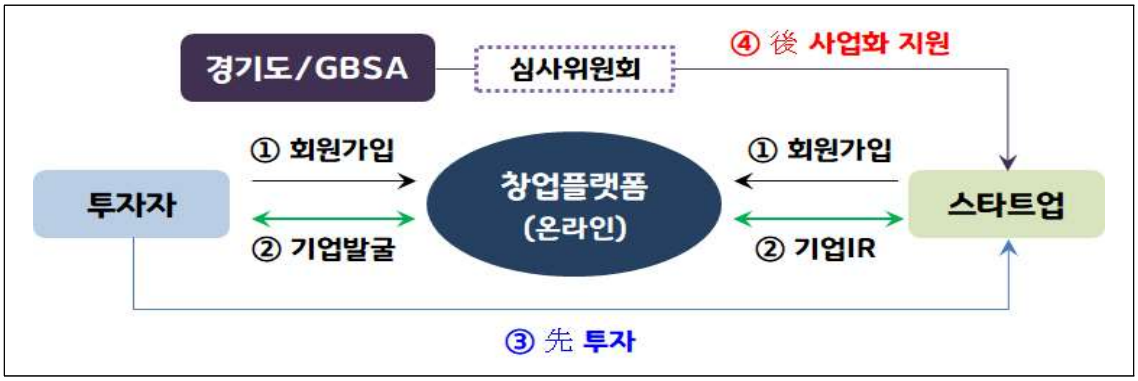

□ 신청기간 및 접수

○ [신청기간] 상시접수

※ 전월 신청현황을 취합하여 매월 초 심사/기업선정을 진행하며, 10개사가 선정될 때까지 상시접수 계속 추진

○ [신청방법] 경기스타트업플랫폼(www.gsp.or.kr)을 통한 온라인신청

- 플랫폼 내 “지원사업”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 및 서류제출
- 마이스페이스홈 - 활동이력 - 지원사업란에서 최종신청여부 확인필요
- 신청서류
  - · 참여신청서, 스타트업 추천서
  - · 사업계획서, 지원금 사용계획서
  - · 투자계약서, 주주명부, 투자금 송금확인증
  - ·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(신청기업,투자사)
  - · 성과증빙(매출,고용,지재권,수상 등)
  - ·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
  - · 각종 동의서(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, 창업동의, 지식재산권 분쟁책임 동의)

※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
-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기업(단, 시효 소멸자는 제외)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
- 창업팀 추천일 기준으로 현재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동일(유사포함) 과제로 창업지원사업(사업화지원사업)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(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, 시설·공간·보육 지원, 멘토링·컨설팅 지원, 행사·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) 또는 협약체결 기간 중 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 참여하는 자
- 창업팀 추천일 기준으로 현재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(사업화지원사업)등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-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기업
-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(민간투자연계형)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중이거나 지원받은 기업 또는 중도 포기한 자

□ 향후 일정

모집공고	⇨	1차심사	⇨	2차심사(최종심사)	⇨	협약체결
상시모집		매월 초		매월 중순		매월 말

※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
□ [문의처]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팀 사업 담당자

031-8039-7104 / joohyun@gbsa.or.kr